

#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I . 예산개요

### 1. 세입예산

■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최종 예산(749만원) 대비 32.5%(243만원) 감액된 5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7,492	5,058	△2,434	△32.5%
임시적세외수입	7,492	5,058	△2,434	△32.5%
과징금및과태료	1,000	0	△1,000	△100.0%
기타수입	6,492	5,058	△1,434	△22.1%

###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비 고
계	7,492	5,058	△2,434	
임시적세외수입	7,492	5,058	△2,434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	0	△1,000	
과태료	1,000	0	△1,000	
기타수입	6,492	5,058	△1,434	
그외수입	6,492	5,058	△1,434	

## 2.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16억 4천 8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억 9천 2백만원 대비 3.5% 증액된 수준이며,  
 201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5억 9천 2백만원 대비 3.5%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1,592,239	1,648,122	55,883	3.5%	
행정관리	소 계	1,592,239	1,648,122	55,883	3.5%
	행정운영경비	502,301	501,629	△672	△0.1%
	사업비	1,089,938	1,146,493	56,555	5.2%
교 부 금	-	-	-	-	

- 2018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8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592	1,592	1,648	56	3.5%
사업예산(계)	1,090	1,090	1,146	56	5.1%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8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감사담당관	617	617	552	△65	△10.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	18	18	0	0.0%
감시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51	351	352	1	0.3%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0	30	28	△2	△6.7%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57	157	91	△66	△42.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5	45	45	0	0.0%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6	16	18	2	12.5%
안전감사담당관	108	108	132	24	22.2%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40	40	40	0	0.0%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68	68	92	24	35.3%
조사담당관	365	365	463	98	26.8%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5	5	5	0	0.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6	66	71	5	7.6%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152	152	252	100	65.8%
기강감찰 운영	50	50	49	△1	△2.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2	92	86	△6	△6.5%
행정운영경비(계)	502	502	502	0	0.0%
기본경비	502	502	502	0	0.0%

## Ⅱ.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검토

-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최종 예산 대비 32.5% 감액된 5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7,492	5,058	△2,434	△32.5%
임시적세외수입	7,492	5,058	△2,434	△32.5%
과징금및과태료	1,000	0	△1,000	△100.0%
기타수입	6,492	5,058	△1,434	△22.1%

-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수당 등 환수, 공익제보보상금 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업무과정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청백-e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집행잔액으로 전년(35만원) 대비 777.6% 증액한 2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요구
징수액	6,173	1,686	352	2,737

※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간 징수액의 평균으로 산출

## 나. 수당 등 환수

- ‘수당 등 환수’는 감사결과 부정지급 및 과지급된 수당과 급여를 환수한 금액으로 1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수당 등 환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요구
징수액	0	7	0	6,600	1,651
부과내역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여과지급분환수	

- ‘수당 등 환수’는 매년 발생여부 및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4년간의 평균 환수액으로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과목별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예산편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

-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제29조1)를 준용하여 보상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지급금 보다 지급받은 구조금이 초과하는 경우 반환받는 금액으로 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익제보보상금 상환 현황 >

(단위:천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요구
징수액	341	1,268	402	670

※ 2018년 세입추계는 2015년, 2016년, 2017년의 징수액을 평균하여 산출

- 1) 「공익신고자 보호법」(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2. 세출예산 검토

-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16억 4천 8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억 9천 2백만원 대비 3.5% 증액된 수준이며, 201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5억 9천 2백만원 대비 3.5%(5천5백9십만원) 증액된 수준임.

### < 2018 감사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1,592,239	1,648,122	55,883	3.5%	
행정관리	소 계	1,592,239	1,648,122	55,883	3.5%
	행정운영경비	502,301	501,629	△672	△0.1%
	사업비	1,089,938	1,146,493	56,555	5.2%
교 부 금	-	-	-	-	

- 감사위원회의 사업비는 안전감사 사례집 제작(2천4백만원, 신규)과 공익제보 포상금(1억원 증액)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비는 감사담당관 5억5천만원, 안전감사담당관 1억3천만원, 조사담당관 4억6천만원 수준임.

### < 2018 감사위원회 담당관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8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592	1,592	1,648	56	3.5%
사업예산(계)	1,090	1,090	1,146	56	5.1%
감사담당관	617	617	552	△65	△10.5%
안전감사담당관	108	108	132	24	22.2%
조사담당관	365	365	463	98	26.8%
행정운영경비(계)	502	502	502	0	-

## 〈 감사담당관 소관 〉

### 가.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는 기관별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노력을 유도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5,834	32.4%	18,000	-
사무관리비	5,000	-	0%	5,000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5,000	-	0%	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5,834	83.3%	7,000	-
포상금	6,000	-	0%	6,000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시상	6,000	-	0%	6,000	-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과 시상식은 12월에 계획되어 있어 집행예정으로 보고함.

-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은 감사위원회의 정책사업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금의 경우 2009년부터 관행적인 예산편성(6백만원)과 사업추진(선정 및 시상)이 반복되고 있어, 실적평가 및 시상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내역 〉

(2017.11.31.기준, 단위: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편성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6,000	26,000	26,000	25,111	18,000	5,834	18,000
사무관리비	5,000	5,000	5,000	4,124	5,000	-	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15,000	15,000	14,987	7,000	5,834	7,000
포상금	6,000	6,000	6,000	6,000	6,000	-	6,000

나.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3억5천1백만원) 대비 0.3%(83만원) 증액된 3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51,243	179,596	51.1%	352,074	0.2%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143	14,245	74.4%	19,974	4.3%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19,143	14,245	74.4%	19,974	4.3%
사무관리비	258,000	103,200	40%	258,000	-
감사위원회 운영	48,000	31,430	65.5%	48,000	-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200,000	71,770	35.9%	2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10,000	-	0%	1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23,750	83.3%	28,500	-
특정업무경비	45,600	38,401	84.2%	45,600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5,600	38,401	84.2%	45,600	-



-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2)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방대한 감사대상에 비해 부족한 인력 및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감사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공익감사단은 2016년(8월) 15명으로 시작해 2017년(1월) 초 83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20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까지 공익감사단의 누적 활동 인원은 90명에 불과해 공익감사단이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 및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익감사단의 구성현황 및 활동내역 〉

○ 공익감사단 분야별 구성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분야	안전 시스템	건축	방재	설비	토목	환경	행정사	시정 분야
계	200	24	15	27	20	4	7	12	3	7	11	1	14	55
1차	15	5	5	5	-	-	-	-	-	-	-	-	-	-
2차	68	18	10	10	15	4	7	-	-	-	-	-	4	-
3차	117	1	0	12	5	-	-	12	3	7	11	1	10	55

○ 공익감사단 활동 내역

- 총 27회 90명 감사 참여 및 전문분야 자문('17. 10월 현재)
- 감(조)사 참여 15회 62명, 지도·점검 참여 3회 6명, 전문분야 자문 9회 22명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비리 및 행정착오 시 경보 발령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을 포상하기 위해 전년(3천만원) 대비 6.1%(180만원) 감액된 2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의 교육자료 인쇄비(3백만원)가 행정운영경비를 활용하여 예산 미편성.

###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0,069	23,069	76.7%	28,237	△6.1%
사무관리비	2,000	2,000	100%	0	△100%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교육운영	2,000	2,000	100%	0	△100%
포상금	7,000	0	0%	7,000	0%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7,000	0	0%	7,000	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1,069	21,069	100%	21,237	0.8%
청백e 통합모니터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21,069	21,069	100%	21,237	0.8%

####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 청백-e 시스템 구축

- 기본개념 :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자동 경보 ⇒ 비리 및 행정오류 사전예방
- 청백-e 시스템 운영 시작일 : 2015.1.1.
- 구축사유 : 행정오류, 비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5대 행정시스템 연계
- 사업방법 : 행정자치부,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업무 위·수탁
- 대행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시스템의 경보발생 대비 처리 비율이 사전경보의 경우는 100%처리 되고 있으나, 사후경보에 대해서는 88.3%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어, 미처리된 11.7%는 비리유발 소지 및 행정오류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처리현황 〉

(2015.1.1. ~ 2017.9.30., 단위:건)

시 기	예방 프로그램 수	경보발생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
합 계	47	23,682	20,936	88.4
사 전	2	172	172	100.0
사 후	45	23,510	20,764	88.3

라.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서울시의 청렴시책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교재(370만원), 홍보물 제작(3백만원), 교육(2백만원), 캠페인(4백만원), 하정청백리 포상 등의 사업에 전년(1억 5천 6백만원) 대비 42.0%(6천 5백 8십만원) 감액된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56,650	14,190	9.1%	90,850	△42.0%
사무관리비	108,750	500	0.5%	48,750	△55.2%
신민심서 등 청렴교육 교재 제작	3,750	500	13.3%	3,750	-
청렴홍보물제작	3,000	-	0%	3,000	-
투자출연기관 임원 청렴교육	2,000	-	0%	2,000	-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캠페인	45,000	-	0%	40,000	△11.1%
청탁금지법 사례집발간	20,000	-	0%	0	△100%
청렴교육 영상제작	35,000	-	0%	0	△100%
국외업무여비	25,000	2,616	10.5%	20,000	△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7,918	83.3%	9,500	-
포상금	13,400	3,156	23.6%	13,400	-
하정청백리 포상	9,000	-	0%	9,000	-
청렴활동 직원 참여 포상	4,400	3,156	71.7%	3,600	△18.2%

- 청렴은 개인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의 확산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청렴문화 확산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었다는 점, 캠페인을 위해 편성된 4천5백만원에 대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점(2017행감요구자료 220p), 2018년 미편성된 ‘청렴표어 공모’가 2018년 사업내용에 포함(사업설명서 40p)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에 청렴문화 확산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 예산편성 필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공직사회 혁신 캠페인 추진 내역 〉

**1. 공직사회 혁신 캠페인 추진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위원회, 220p 발췌

마.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청렴우수사례를 포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5,200	31,040	68.7%	45,200	-
사무관리비	40,000	31,040	77.6%	40,000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운영	5,000	-	0%	5,000	-
간부청렴도 평가용역	35,000	31,040	88.7%	35,000	-
포상금	5,200	-	0%	5,200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포상	5,200	-	0%	5,200	-

○ 간부청렴도 평가는 2018년 사업에는 삭제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 등과 연관이 있는 민간인에게 청렴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는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2018년도 예산(안), 1597p)으로 산출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중복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본 조사기간과 관련하여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4월부터 협의하여 5~7월 사이에 조사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사기관 중 일부(7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중복되고 있으며, 협의지연 및 설문조사 업체선정 지연의 경우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바, 사업 추진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의 자체 설문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시기와 같은 시기(7~11월) 및 유사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신뢰도 등을 하락시키는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도 측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5~7월)에 계획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어, 권익위원회와 조기 협의가 불가능할 시 불용될 소지가 있음.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발취 〉

- 측정시기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기간(7월~ 11월)을 제외한 1~6월, 12월 실시
- 금지내용 : ‘부패금액 및 빈도, 부패경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부패 경험 관련 세 부사항 추가질문 금지
- 설문조사 제한 : 권익위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검토 결과 중첩적 조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 가능

〈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

바.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은 공사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불공정사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39,940	21,180	53.0%	39,940	-
사무관리비(20101)	39,940	21,180	53.0%	39,940	-
명예하도급호민관 수당	37,440	18,680	49.9%	31,200	△16.7%
하도급관계자 교육 및 홍보물 등 제작	2,500	2,500	100%	8,740	249.6%

- 본 사업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산출기초 중 ‘명예하도급호민관 수당’을 6백만원 감액편성하고,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 사례집 제작에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명예하도급호민관

- 인 원 : 16명 (4개 분야-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 임 무 : 공사현장 하도급 모니터링, 부조리 신고시 실태점검 및 법률상담 지원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공사대금·자재·노임 미지급 해결 현황 〉

(단위 : 천/백만원)

	접 수	처리 내역				금액
		해 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처리	
합계	765	494	20	98	99	11,126
2017년6월말	215	140	4	21	50	2,458
2016년	311	215	12	55	29	5,224
2015년	239	139	4	22	20	3,444

- 적극적인 신고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활성화에 기반이 되어 우수 사례 전파 및 신고독려를 위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실비상당의 활동비만 지급하고 있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의 활동비를 감액편성한 것은 하도급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명예 하도급호민관 수에 못 미치는 예산편성(현원 16명, 2017년 12명, 2018년 10명으로 예산편성)이 지속되고 있어 효율적 예산편성인지, 예산의 과소 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는 한강교량 등 대형시설물, 건설공사장의 위해요인의 사전 점검 및 감사를 위해 전년(6천8백만원) 대비 34.3%(2천3백4십만원) 증가한 9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68,170	52,033	76.3%	91,570	34.3%
사무관리비	18,450	13,363	72.4%	38,150	106.8%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9,450	10,160	107.5%	9,450	-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3,000	-	0%	3,000	-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	6,000	3,203	53.4%	6,000	-
안전감사 사례집 제작비	-	-	-	14,000	신규
안전현장 점검 피복비	-	-	-	5,700	신규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3,000	9,724	74.8%	16,700	28.5%
특정업무경비(20403)	36,720	28,946	78.8%	36,720	-

- 감사·점검 추진 전 간담회비(370만원), 안전감사 사례집 발간(1,400만원), 현장점검 피복비(570만원) 등 총 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피복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기강감찰팀의 절반수준(기강감찰팀 1인당 30만원, 안전감사담당관 15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단계부터 산출기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 감사활동’의 산출기초 〉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50,000*7명*9회 = 9,450천원</li> <li>○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150,000*5명*4회 = 3,000천원</li> <li>○ 안전감사 사례 및 교육자료 인쇄비 6,000*1,000부 = 6,0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50,000*7명*9회 = 9,450천원</li> <li>○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150,000*5명*4회 = 3,000천원</li> <li>○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 6,000*1,000부 = 6,000천원</li> <li>○ 안전감사 사례집 제작비 14,000원*1,000부 = 14,000천원</li> <li>○ 안전현장 점검 피복비 150,000원*38명 = 5,700천원</li> </ul>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지원 = 13,0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지원 = 16,700천원</li> </ul>

〈 조사담당관 소관 〉

아.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은 시기별 취약분야의 점검, 사건·사고 조사 및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년(6천6백만원) 대비 6.4%(420만원) 증액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6,360	49,376	74.4%	70,640	6.4%
사무관리비	10,000	-	0%	10,000	-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8,000	-	0%	8,000	-
숙지도향상 프로그램 운영	2,000	-	0%	2,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	11,000	100%	12,400	12.7%
특정업무경비	45,360	38,376	84.6%	48,240	6.3%

-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동강령 홍보물제작(8백만원)과 숙지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2백만원)은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아, 관행적 예산편성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사업들(감사담당관의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조사담당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미집행 되었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세부 항목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감사위원회 사업 중 ‘사무관리비’ 집행률 50%이하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7년 예산액			2017년 집행액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b>감사담당관</b>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108,750	108,750	108,750	500	0.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5,000	5,000	5,000	0	0.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58,000	258,000	258,000	103,200	40.0%
<b>조사담당관</b>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86,880	86,880	86,880	39,480	45.4%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0	0	0.0%

## 자.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은 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해 신분,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1억5천2천만원) 대비 65.8%(1억원) 증액한 2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151,940	88,425	58.2%	251,940	65.8%
사무관리비	19,740	15,555	78.8%	19,740	-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9,400	8,400	89.4%	9,400	-
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등 운영비	5,340	3,340	62.5%	5,340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5,000	3,815	76.3%	5,000	-
기타보상금	132,200	72,870	55.1%	232,200	75.6%

- 기타보상금은 ‘보상금 및 구조금’과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예산의 증감없이 공익제보 포상금이 100%(1억원) 증액되었음.

###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중 기타 포상금 산출기초 〉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기타보상금	○ 보상금 및 구조금 = 20,000천원	○ 보상금 및 구조금 = 20,000천원
	○ 공익제보 포상금 = 100,000천원	○ 공익제보 포상금 = 200,000천원
	○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대리신고 법률상담 운영 = 12,200천원	○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대리신고 법률상담 운영 = 12,200천원

- 제267회 임시회(2016년5월)에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처분(통고, 징계) 및 시정조치 등까지 포함되어, 2017년 포상금의 대상이 크게 증가하였고, 제276회 임시회에서 보상금 산정비율이 상한금액의 제한없이 보상대상가액의 30%로 개정됨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포상금 대상자 수요과약 및 공익제보 증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및 수요를 충족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차.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는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 유도 및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9천2백만원) 대비 6.1%(550만원) 감액된 8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2017.10.31.기준, 단위:천원)

세부/통계목/산출기초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1,880	43,680	47.5%	86,310	△6.1%
사무관리비	86,880	39,480	45.4%	81,310	△6.4%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00	8,400	100%	11,550	37.5%
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14,000	13,260	94.7%	19,250	37.5%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38,880	6,220	16.0%	12,960	△66.7%
위원 심사활동비	11,600	11,600	100%	11,550	△0.4%
퇴직공직자 안내서 등 제작	4,000		0%	16,000	300%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내워크숍	10,000		0%	10,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4,200	84.0%	5,000	0%

- 퇴직공무원 안내서 제작 예산의 경우는 전년(4백만원) 대비 300% 증액한 1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법규의 변동사항 및 구체적 안내에 대한 요구 증가로 증액편성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퇴직공무원 행동가이드라인 안내서 제작부수 증가 사유(1,000부→5,000부)

- 퇴직공직자관련 법규와 재산변동사항 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준수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지침서와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 1회 배부에서 분기별 배부로 계획하였음.
- 가이드라인 안내서는 퇴직공직자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퇴직후 행동의 절제, 부당이득 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업무취급 및 취업 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퇴직공직자 안내서 제작’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내워크숍’은 2017년도 예산은 미집행 상태이며(10월말 현재), 연말에 90%이상 사용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임기는 2018년 1월 17일까지인바, 임기 말 워크숍 시행 및 안내서 연말 출판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업시행의 시기 조정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년도별 공직윤리위원회 개최 건수 〉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건수	10회	9회	7회	8회	11 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건수는 정기재산등록심사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 시급하고 불가피한 안건처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증가하였음.

## 카. 감사·조사 장비의 현실화

- 감사위원회는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강화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및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나, 안전감사를 위한 장비,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장비는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감찰장비 구입’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필요장비 내역의 25%수준으로 보여지는 바,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전문성 및 직원들의 안전과 감사·조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기강 감찰팀 필요장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장비명	구입예정 모델명	예정 가격	수량	소요 예산	비고
1	적외선 망원경	NV-860D	448	3	1,344	감찰3개반
2	360회전 액션캠	코닥 PIXPRO SP360	683	3	2,049	감찰3개반
3	보이스레코더	소니 ICD-TX650	130	3	390	감찰3개반
4	쌍안경(망원경)	니콘 18×70 IF WP WF	2,260	3	6,780	감찰3개반
5	무선초소형 캠코더	NEWOWL	355	3	1,065	감찰3개반
6	태블릿 PC	삼성전자 갤럭시탭A 10.1 2016에디션 32GB	250	3	750	감찰3개반
7	위장복	중고의류 구매 (택배기사 복 등)	20	3	60	감찰3개반
<b>합 계</b>					<b>12,438</b>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	-----	-------	-----